

2025

도로교통안전관리자 자동차관리법

엠북 교통

공부혁명!
mbook.kr

- ★ 스마트폰 수험총서
- ★ 고난도 문제 대비, 고득점용
- ★ 법, 시행령, 시행규칙 종합
- ★ 최근 개정 및 시행 예정 내용 포함
- ★ 2시간 40분 완성

도서명 : 자동차관리법

ISBN : 979-11-94286-68-4

발간일 : 2025-03-24

형식 : 스마트폰용 전자책(PDF)

저자 : 엠북

출판사 : 엠북

홈페이지 : <https://www.mbook.kr/>

이메일 : by4782@gmail.com

정가 : 15,000원



자동차관리법

[목차]

제1장 총칙(p5)

제2장 자동차의 등록(p21)

제3장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p57)

제4장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p100)

제5장 내압용기의 안전관리(p102)

제6장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p112)

제7장 자동차의 검사(p114)

제8장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p133)

제9장 이륜자동차의 관리(p153)

제10장 자동차관리사업 등(p164)

제11장 국제조화(p205)

제12장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p204)

제13장 자동차매매업 공제조합(p221)

제14장 보칙(p238)

제15장 벌칙(p272)

제16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p290)

[약어]

- 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 지자체장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검사대행자는 자동차나 이륜자동차

검사대행자

- 업데이트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법 개정]

- 봉인제도는 25년 2월 21일부터 폐지
- 사이버보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변경 등
관련 내용은 25년 8월 14일 시행

[비고]

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

검은색은 법

보라색은 시행령

갈색은 시행규칙

붉은색은 시행예정

초록색은 최근(1~2년내) 개정·신설 내용

(Copyright) 공부혁명 엠북(mbook.kr)

제1장 총칙

1~4조

1. 목적

-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자동차관리사업**(이하 **관리사업**) 등 정함
- 효율적 관리와 성능/안전 확보
- 공공 복리 증진

2. 정의

1) 자동차

- 육상 이동
- 원동기에 의해 이동하거나 원동기에

견인되어 이동(피견인자동차)

- 단, 건설기계, 농업기계, 군수품 차량, 궤도/공중선 운행 차량, 의료기기 제외

2) 원동기

- 자동차 구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내연기관, 전동기 등 동력발생장치

3) 자율주행자동차(이하 자율주행차)

- 운전자/승객 조작없이 스스로 운행

4) 미완성자동차

- 차대(없는 경우 차체), 원동기와 동력전달, 주행, 조향, 제동, 완충, 연료, 전기/전자 장치

등 최소한의 구조/장치 구비

- 사용이 가능하도록 추가 제작/조립 공정
필요

5) 단계제작자동차

- 미완성자동차를 이용해 운행이 가능하도록
단계별로 제작

6) 구동축전지(25년 2월 시행)

- 구동용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지나
유사 기능 전기에너지 저장매체

7) 운행

- 사람/화물 운송 여부 무관

- 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

8) 자동차사용자(이하 사용자)

- 소유자, 소유자로부터 운행 등 위탁받은 자

9) 형식

- 차 구조/장치 형상, 규격, 성능

10) 내압용기

- 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차에

장착하거나 장착 목적으로 제작

- 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 포함

1) 다음은 25년 8월 14일 시행

가) 자동차 사이버공격/위협

-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서비스 거부,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으로
- 차 부품, 장치, 정보통신기기, 관련 정보시스템을 침입, 교란, 마비, 파괴하거나
- 소프트웨어, 자동차제어 정보 등 위조, 변조, 훼손, 유출하는 행위 및 관련된 위협

나)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 사이버공격/위협에서 차 보호
-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 포함 종합 관리체계

다) 소프트웨어

- 자동차에 설치되는 소프트웨어

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 소프트웨어 변경, 추가, 삭제

2) 폐차

가) 차를 해체해 다음 장치 성능을 유지할 수 없게 압축, 파쇄, 절단

- 차대번호 표기 차대/차체

- 조향기어기구

- 마스터실린더/배력장치

- 내압용기

· 단, 내압용기검사일부터 8년 이하인

압축/액화 천연가스 내압용기 제외

- 에어백 모듈

나) 차를 해체않고 압축/파쇄

3) 관리사업

가) 자동차매매업(이하 매매업)

- 매매, 매매 알선, 등록 신청 대행

- 신조차,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차) 제외

나)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

- 차 점검, 정비, 튜닝

- 이륜차와 다음 작업 제외

· 오일 보충/교환, 세차

- 에어크리너엘리먼트/휠터류 교환
- 배터리, 전기배선, 전구교환, 전기장치
- 냉각장치
- 타이어
- 판금/도장/용접 미수반 차내설비/차체 정비
- 다음 작업은 포함
- 튜닝승인대상
- 전조등, 속도표시등
- 고전원 전기장치
- 워터펌프
- 휠얼라인먼트
- 범퍼, 본넷트, 문짝, 웬다, 트렁크리드 교환

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하 해체업)**

- 폐차 요청된 차 인수, 재사용 가능 부품 회수, 폐차, 말소등록신청 대행
- 이론차 제외

4) 사고기록장치

- 충돌 등 다음사고 전후 일정 시간 운행정보 저장, 저장된 정보 확인

- 0.15초내 진행방향의 속도 변화 누계가 시속 8km 이상에 도달(측면방향 속도 변화가 기록되는 차는 측면방향 속도 변화 누계가 0.15초내 시속 8km 이상에 도달하는 경우 포함)
- 에어백, 좌석안전띠 프리로딩 장치 등 비가역안전장치 전개

5) 자동차 튜닝

- 구조/장치 일부 변경 또는 부착물 추가

6) 표준정비시간

- **자동차정비사업자(이하 정비사업자)** 단체가 사용하는 정비작업별 평균 정비시간

7) 전손 처리 자동차(이하 전손차)

- 피보험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차의 손해액과 **보험회사(이하 보험사)** 부담 비용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
- 보험사는 도난분실, 수리 가능, 수리

불가능(폐차)로 분류

8) 자동차경매

- 경매장 개설
- 신조차/이륜차 제외
- 전자 경매 포함

9) 성능시험은 부품/장치 안전/성능 시험

3. 차량기산일

- 제작연도에 등록된 때 최초 신규등록일
- 이외는 제작연도 말일

4. 자동차의 종류

-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령**(이하 **부령**)
- 부령에 따라 세분 가능

가. 승용자동차

- 10인 이하

나. 승합자동차

- 11인 이상
- 다음은 인원과 관계없이 승합자동차로 봄
- 내부 특수 설비로 승차인원 10인 이하
-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 10인 이하

전방조종자동차

다. 화물자동차

- 화물적재공간 구비
- 총적재화물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 무게보다 많음

라. 특수자동차

- 자동차 견인, 구난작업, 특수 용도로 사용
- 승용/승합/화물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마. 이륜차

- 총배기량, 정격출력, 크기 무관
- 1인/2인 운송에 적합한 이륜차, 유사 구조 자동차

5. 장관은 지자체장의 자동차관리 사무

6. 장관의 자동차정책기본계획 수립

가. 수립

1) 5년마다 수립/시행 요

2) 내용

- 기술발전 전망, 안전/관리 정책 추진
- 안전기준 등 연구개발/기반조성, 국제조화
- 안전도 향상
- 관리제도, 소비자 보호
- 신기술 적용 검사기준 마련, 검사 기술/기기 연구/개발/보급

· 25년 8월 14일부터는 커넥티드자동차 등

신기술 적용 검사기준 마련, 안전관리 및 검사 기술/기기 연구/개발/보급

나. 확정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중앙기관장)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의견 들은 후 국가교통위 거쳐 확정
- 수립된 계획 변경시도 같다
- (예외) 다음의 경미한 변경
 - 사업 비용 15/100, 기간 1년내 변경
 - 관계 법령/계획 변경인한 변경
 - 계산착오, 오기, 누락 등 변경근거 분명
 - 계획 목적/방향에 영향없는 장관 고시 사항